

「한국은행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 align="center"><u>< 신 설 ></u></p>	<p align="center">부 칙 (2024. 7.)</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 명시</p>											
<p><별표1></p> <p align="center">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p> <table border="1" data-bbox="141 568 925 1114"> <thead> <tr> <th>지원대상코드</th> <th>지원대상</th> <th>지원부문</th> <th>선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A1 ~ A15</td> <td>(생 략)</td> <td>(생 략)</td> <td>(생 략)</td> </tr> <tr> <td>A16</td> <td>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td> <td>특별</td> <td> -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하고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주점업(KSIC: 5621)은 제외> 5) 여가업(KSIC: 90~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KSIC: 9124) 및 무도장 운영업(KSIC: 91291)은 제외>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신설> </td> </tr> </tbody> </table> <p>주: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4) 유관기관 추천·선정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강원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p>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 A15	(생 략)	(생 략)	(생 략)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하고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주점업(KSIC: 5621)은 제외> 5) 여가업(KSIC: 90~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KSIC: 9124) 및 무도장 운영업(KSIC: 91291)은 제외>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신설>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 A15	(생 략)	(생 략)	(생 략)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하고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주점업(KSIC: 5621)은 제외> 5) 여가업(KSIC: 90~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KSIC: 9124) 및 무도장 운영업(KSIC: 91291)은 제외>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신설>										
<p><별표1></p> <p align="center">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²⁾</p> <table border="1" data-bbox="1010 572 1771 1110"> <thead> <tr> <th>지원대상코드</th> <th>지원대상</th> <th>지원부문</th> <th>선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A1 ~ A15</td> <td>(생 략)</td> <td>(생 략)</td> <td>(생 략)</td> </tr> <tr> <td>A16</td> <td>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td> <td>특별</td> <td>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 5) 여가업(KSIC: 90~91)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경후지역 소재 업체 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³⁾ </td> </tr> </tbody> </table> <p>주: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4) 유관기관 추천·선정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강원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p>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 A15	(생 략)	(생 략)	(생 략)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 5) 여가업(KSIC: 90~91)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경후지역 소재 업체 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³⁾	<p>-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제외업종은 <별표2>에서 규정</p> <p>- 지원대상 추가</p>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 A15	(생 략)	(생 략)	(생 략)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 <택시 운송업(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 5) 여가업(KSIC: 90~91)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경후지역 소재 업체 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³⁾										

<별표2>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별표2>

강원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²⁾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도 강원본부장이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특히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명에 호프, 비어, 병원 등 제외업종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불건전, 사행성 조장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업종 추가